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6.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김장관 의원 등 5명(이진환, 정순옥, 남현주, 강한곤)
- 발의일자: 2025. 5. 27.
- 회부일자: 2025. 5. 27.
- 검토기간: 2025. 5. 27. ~ 6. 5.

2. 제안이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공제사업이 2025년 신규 개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공제회비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 제외 단서 조항 삭제(안 제8조제8항제2호)
-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입한 공제회의 수령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 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을 추가(별지 제7호 서식 뒤쪽)

4. 참고사항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5. 27. ~ 6. 9.):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 마련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과 보상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8조제8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가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재해보상의 경우 가입한 공제회로부터 수령한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
 - 별지 제7호 서식에서는 보상청구 시 인감증명서 확인을 삭제하고 신분증을 확인토록 규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재해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지원 근거 마련과 보상금 청구 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확인 사항을 삭제하고, 신분증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적절한 보상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폐지하여 방재단의 사기진작과 보상절차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2호 본문 중 “보험가입비”를 “보험가입비 또는 공제회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단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보험금을 제외한”을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제외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운영 등) ① ~ ⑦ (생 략)</p> <p>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u>보험가입비</u>. 다만, <u>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u></p> <p>3. ~ 7. (생 략)</p> <p>⑨ · ⑩ (생 략)</p>	<p>제8조(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보험가입비 또는 공제회비 <단서 삭제></u></p> <p>3. ~ 7. (현행과 같음)</p> <p>⑨ · ⑩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u>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u></p>	<p>제15조(재해보상) ① ----- ----- ----- ----- ----- -----.</p> <p>----- <u>단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u>-----</p>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제외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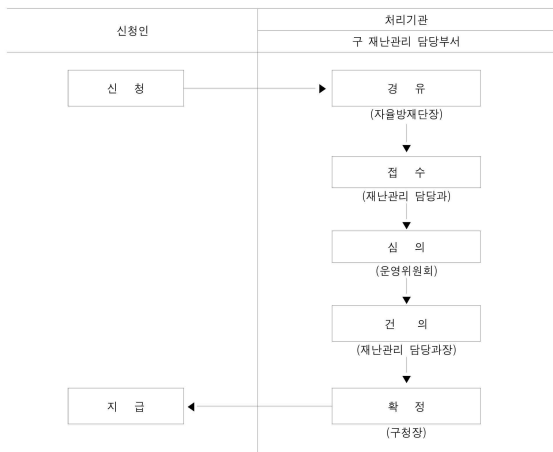
		(위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달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7호서식] 앞쪽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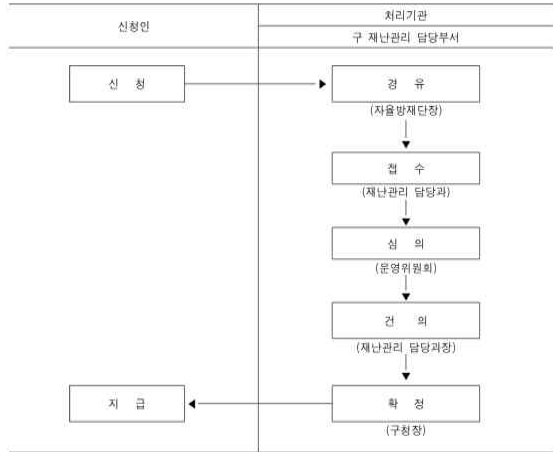
		(위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달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